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. 10. 27 선고 2020가단100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2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전북 부안군 D 답 330m²에 관하여 2012. 9. 3.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2. 9. 7. 접수 제183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허윤범

별지